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3. 5.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4. 3. 5.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 ~ '28) 수립(2023. 12.)에 따른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일부내용(p.14 ~ p.15) 수정
- 변경내용
 -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내용 및 도표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정

3. 추진경과

-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 2023. 11. 29.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수립(복지부) : 2023. 12. 12.
- 변경제출 요청(충청북도, 복지부) : 2024. 2. 8.
- 변경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2024. 2. 27.

4.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 붙임 1.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개요 1부.
2. 변경내용(전후비교)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개요

1. 변경사유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수립*에 따른 수정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023. 11. 29.) 이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2023. 12. 12.)됨에 따라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내용과 도표를 수정

2. 변경내용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 p.14, p.15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p.16, p.17 까지 추가 작성

-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제목을 (1)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과의 연계성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술 내용 수정 보완
-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기술 내용 수정 보완
- (3)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제목을 (3)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로 수정하고 관련 도표 내용을 수정 보완

3. 변경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4. 변경절차

- 연차별 시행계획변경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검토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 군 의회 보고 ⇒ 도 제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전후비교)

제5기('23~' 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전](p.14 ~ p.15)

3)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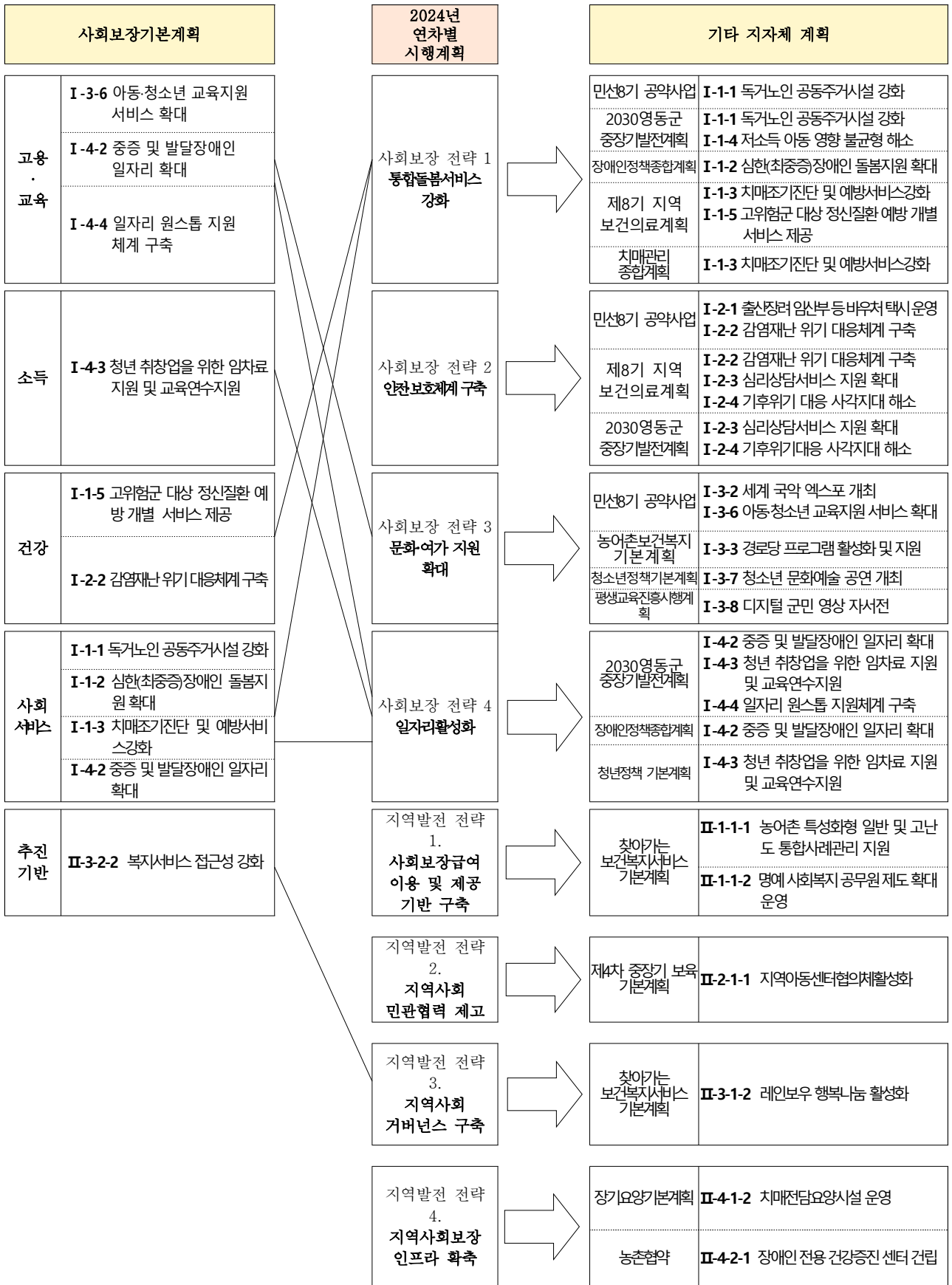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용·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추진기반 분야의 각 사업들을 연계해 목표를 공유하고 일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중장기 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의 연계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효과적인 사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 2030영동군 중장기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본계획,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 기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3)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p.15)



제5기('23~' 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후](p.14 ~ p.17)

3)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p.14~p.15)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과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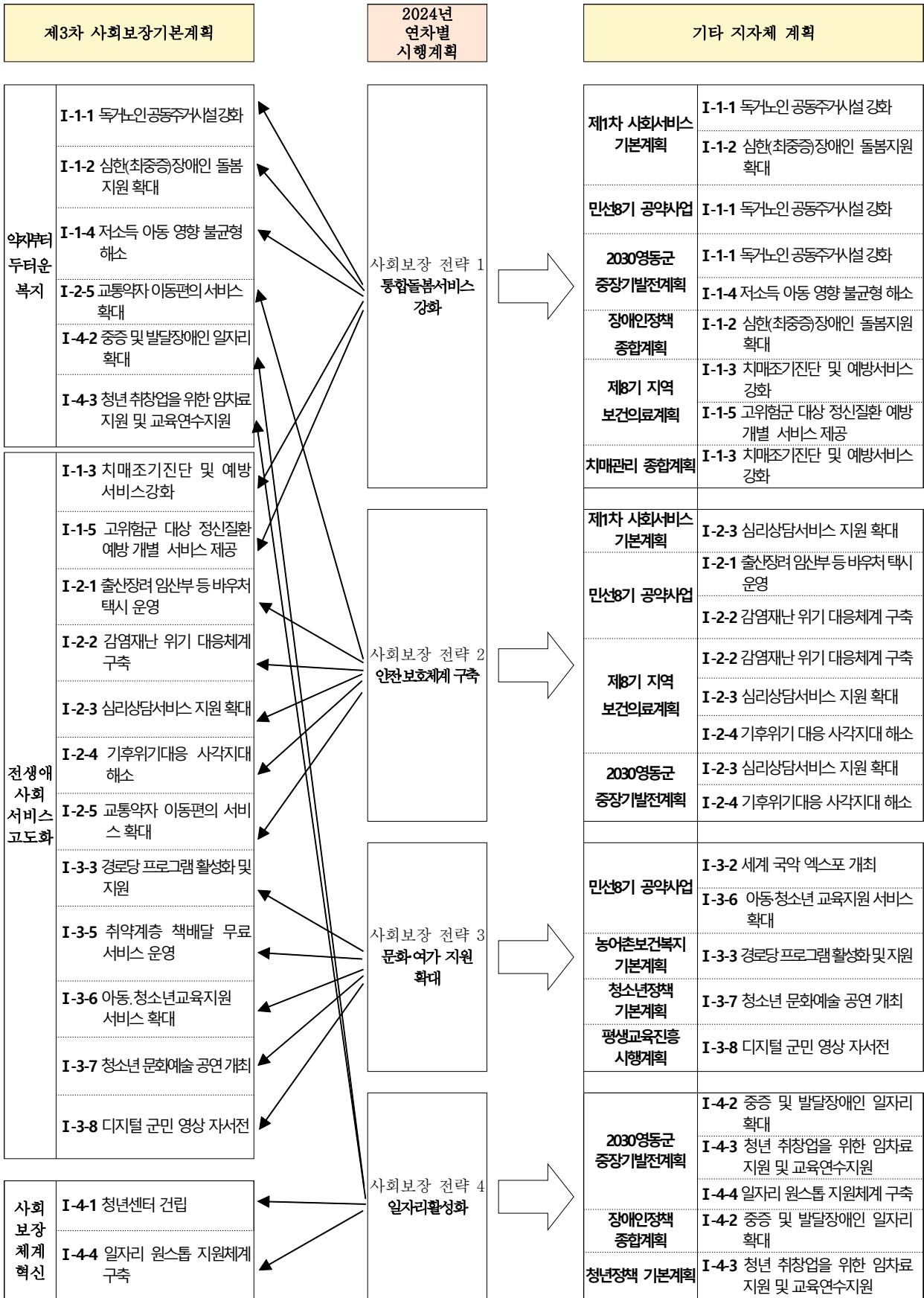
-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비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에 수립되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핵심목표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의 세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영동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회보장전략 1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의 3개사업, 사회보장전략 2 ‘안전·보호체계 구축’의 1개 사업, 사회보장전략 4 ‘일자리 활성화’의 2개 사업,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의 3개 과업,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의 1개 과업,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1개 과업과 연계되며,
- 두 번째 전략인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고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사회보장전략 1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의 2개사업, 사회보장전략 2 ‘안전·보호체계 구축’의 5개 사업, 사회보장 전략 3 ‘문화·여가 지원 확대’의 5개 사업,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의 3개 과업,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의

- 3개 과업,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의 1개 과업,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1개 과업과 관련됨.
- 마지막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전략은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관리,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의 도입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보장 전략 4 ‘일자리활성화’의 2개 사업,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의 2개 과업,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1개 과업과 연계하였음.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위와 같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각 사업들을 연계해 목표를 공유하고 일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기타 중장기 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의 연계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효과적인 사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20~2024)’,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평생교육법」에 따라 수립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영동군 ‘민선8기 공약사업’, ‘2030 영동군중장기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영동군 간 ‘농촌협약’ 등 기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p.16~p.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3. 5.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24-8
----------	--------

제출년월일 : 2024. 3. 5.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목적(안 제1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 및 사업(안 3조, 안 제4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안 제5조)
- 이용 대상자 및 시간(안 제6조, 안 제7조)
- 시설 사용료 등 및 운영비의 보조(안 제8조, 안 제9조)
- 시설 사용 및 이용제한, 손해배상(안 제10조, 안 제11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탁자 자체운영규정(안 제12조)

3.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6조, 제37조
-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 첨 부 1.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에 둔다.

제3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3. 강당 및 강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공동 목욕장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급식지원 등) 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자)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식당은 입주민과 제4조의 사업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제3조제5호의 공동 목욕장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고,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 목욕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목욕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영리행위가 아닌 입주민 복리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 시
4. 시설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이용자, 또는 입주민이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사용 기준표(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운영시간
		일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동 목욕장	1인 1회	5,000원	2,500원	평일 09:00 ~ 17:00

<감면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감면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3호에 따른 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시행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입주자 등에게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계획기준)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②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사업부지 협소, 지역 수요 등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리·운영)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한다.

②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 실	식당 및 조리 실	상담 실 또는 면회 실	집회 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 실	화장 실	물리 치료 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 실	전기 시설	강의 실	휴게 실	객실	공동 목욕 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 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구 분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비 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 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회 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바.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별 운 영 기 준
노인복지관	<p>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해야 한다.</p> <p>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p> <p>1) 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p> <p>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p> <p>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계약의</p>

	<p>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p> <p>4) 교양강좌 등의 실시</p> <p>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p> <p>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p>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3. 5.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9
----------	--------

제출년월일 : 2024. 3. 5.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의료법인 조운의료재단 위탁운영 기간만료(2024.06.30.) 예정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 등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등)
- 필 요 성 :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사무 내용

- 노인 및 치매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 등에 관한 사항
- 병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290
- 병 상 수 : 22실 120병상(치매전문병동 2병동 52병상 포함)
- 시설규모
 - 건축면적 : 1,640.74㎡
 - 연 면 적 : 4,104.66㎡(지상 3층)

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4.07.01.~2029.06.30.)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해당 없음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 자격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3.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설치·운영 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군립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군립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군립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립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구입 승인 등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를 대신하여 완공된 시설물이나 구입한 물품은 지체 없이 군수의 명의로 등기 또는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